

과징금 산정 기준(제4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다.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(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라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.
- 마.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개설,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,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.
- 1) 의료인인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
 - 2) 의료법인,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
 - 3) 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
- 바.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 부과 기준

등급	연간 총수입액 (단위 : 100만원)	1일당 과징금 금액 (단위 : 원)
1	50 이하	18,000
2	50 초과 ~ 100 이하	55,000
3	100 초과 ~ 200 이하	164,000
4	200 초과 ~ 300 이하	273,000
5	300 초과 ~ 400 이하	383,000
6	400 초과 ~ 500 이하	493,000
7	500 초과 ~ 600 이하	892,000
8	600 초과 ~ 700 이하	1,054,000
9	700 초과 ~ 800 이하	1,216,000

10	800 초과 ~ 900 이하	1,378,000
11	900 초과 ~ 1,000 이하	1,540,000
12	1,000 초과 ~ 2,000 이하	2,042,000
13	2,000 초과 ~ 3,000 이하	3,404,000
14	3,000 초과 ~ 4,000 이하	4,765,000
15	4,000 초과 ~ 5,000 이하	6,127,000
16	5,000 초과 ~ 6,000 이하	6,151,000
17	6,000 초과 ~ 7,000 이하	7,141,000
18	7,000 초과 ~ 8,000 이하	8,239,000
19	8,000 초과 ~ 9,000 이하	9,338,000
20	9,000 초과 ~ 10,000 이하	9,887,000
21	10,000 초과 ~ 20,000 이하	10,027,000
22	20,000 초과 ~ 30,000 이하	19,068,000
23	30,000 초과	23,836,000